〈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 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u>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 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10100457		
최초 등록일	2011.10.01.	최종 등록일	

The 기발한치킨 정보공개서

[(주)더기발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수 없습니다.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가맹사업은 법률,회계,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더기발한

대표번호	1544-9922	1544-9922 팩스번호			
가맹사업부서	가맹사업부 담당전화번호		1544-992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00 (천호동,2층)				

홈페이지 www.giblhan.co.kr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정 보 공 개 사 항

1.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일	2014.09.05					
법인설립등기일	2014.09.05 사업자등록일 2014.09.18					
법인등록번호	110111-5510311	사업자등록번호	212-86-11176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명칭(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더기발한	(주)더기발	The 기발한치 킨 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00 (천호동,2층)
특수관계인	최병수(대표이사)	한	대표자	대표번호
(임원)	이설희이사)		최병수	1544-9922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구분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	--------

가맹본부가	㈜기발	The 기발		경기도 하남시	
브랜드를	한사람	기면 기술 하치키	2014.11.15	샘재로 74-7	명재정
인수함	들	[인시간		(천현동,2 층)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The 기발한치킨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로고
The 기발한치킨	The 기발한치킨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TIES GIBAL GIBAL Chicken

6.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16,580	1,040,092	-223,512	4,509,125	-672,416	-679,100
2022년	981,388	1,189,656	-208,267	4,868,445	34,389	15,244
2023년	950,195	1,157,081	-206,885	5,060,523	-5,751	1,381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어티 서대 지수		성명 직위			·업경력	
관련여부	93	47	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된 H. A	대표	2015.01.30~현재	㈜더기발한	업무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최병수	감사	2014.09~2015.01	㈜더기발한	회계감사	
	이설희	이사	2014.09~현재	㈜더기발한	경영관리	

8.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2023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검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 년 12 월 31 일	1	1	8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구분	상호	영업표지	영업표지정보공개서등록번호		사업내용
가맹본부	㈜기발한	치킨이남달라	20190385	2018.6.~현재	치킨가맹사업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The 기발한치킨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권리 범위	출원 및 등록 일자	출원 및 등록 번호	권리자 (출원인)	등록 만료일
서비스 표	THE COLON	가맹점 상호로 사용	등록일자 2011.07.21 등록일자 2011.07.21	등록번호 4008736560000 등록번호 4008736550000	주식회사 더기발한	2031.0 7.21
서비스 표	? इंदिर्ग्हा	가맹점 상호로 사용	등록일자 : 2015.03.10	등록번호 : 4103155440000	주식회사 더기발한	2025.0 3.10.

The 더기박하치킨

		1116 -1	7122712				
	범위를 벗어L 주의하여야 힡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					

Ⅱ.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The 기발한치킨의 가맹사업 시작일 2011년 6월 3일 입니다. 당사의 The 기발한치킨의 직영점 시작일 2011년 8월 1일 입니다. (당사는 ㈜기발한사람들로부터 당해 브랜드를 2014.10.01 일에 인수하여 가맹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2. The 기발한치킨의 연혁

당사의 The 기발한치킨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발한사람들	The 기발한치킨	명재정	2011.06.03 ~ 2013.03.18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34-2 현대드림밸리 201
㈜기발한사람들	The 기발한치킨	명재정	2013.03.18~2014.11	경기도 하남시 샘재로 74-7 (천현동,2 층)
㈜더기발한	The 기발한치킨	명재정	2014.11~2015.0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00 (천호동,2층)
㈜더기발한	The 기발한치킨	최병수	2015.02~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00 (천호동,2층)

3. 더기발한치킨의 업종

영업표지	Ę	업종
더기발한치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니기달인시신	치킨	치킨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The 기발한치킨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The 기발한치킨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TICE	2021년 12월 31일			2022	연 12월	31일	2023	8년 12월	31일
지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0	20	-	12	12	-	10	10	-
서울	3	3	_	1	1	_	1	1	-
인천	-		_	-	-	_	_		_

부산	1	1	-	1	1	_	-	-	_
대구	_	-	-	-	-	-	-	-	_
광주	_	ı	ı	ı	ı	ı	ı	ı	_
대전	_	ı	ı	ı	ı	ı	ı	ı	_
울산	_	I	ı	ı	ı	ı	ı	I	_
세종	_	ı	ı	ı	ı		ı	ı	_
경기	12	12	ı	9	9	ı	8	8	_
강원	_	1	I	ı	ı	ı	I	1	_
충북	_	-	-	-	-	-	-	-	_
충남	_	ı	ı	ı	ı	ı	ı	ı	_
전북	1	1	-	1	1	-	1	1	_
전남	1	1	_	_	_	_	_	_	_
경북	1	1	ı	_	ı	-	ı	ı	_
경남	1	1	_	_	_	_	_	-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브랜드명입력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The 기발한치킨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 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20	1	_	1	-	20
2022 년	20	_	_	8	-	12
2023 년	12	_	-	2	-	10

6. The 기발한치킨 외에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사들/이로 이곳 여어표기 정보공개서		가!	맹점 및 직영	점 수	
상호/이름	업종	영업표지	등록번호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3
(주)더기발한	치킨	치킨이남 달라	20190385	3/-	2/-	2/-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The 기발한치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0001101	연간 마	H출액(단위:	천원, 물류	라마출자료 그	기준, VAT [미포함)	
지역	2023 년말	연간 평균	·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산출수
	가맹점수	평균매출액	3.3m ² 당	상한	3.3m ² 당	하한	3.3m ² 당	
전체	10	164,648	8,257	492,978	18,414	18,769	916	10
서울	1	_						5 곳미만
인천	_	-	-	-	-	-	-	-
부산	_	-	-	-	-	-	-	5곳미만
대구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8	174,631	8,061	492,978	13,252	18,769	916	8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1	-	-	-	-	-	-	5곳미만
전남	_	-	-	-	-	-	-	
경북	_	-	-	-	-	-	-	
경남	-	_	_	_	_	_	_	
제주	_	-	-	_	-	-	-	_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매출액을 당사 물류공급 매출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산정 가맹점수는 10/10개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식= 공급가액*100/43]

[위 표의 매출액은 물류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가맹점의 매출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사입여부,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더기발한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0	3,08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잉	·주시 광적면 가ե	t리 728-7외2필지
	대표자	대표전	변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경기	허성환	031-8	55-9155	7
북부	가맹본부와의 계약기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권한
	간	권한	권한	766 7666
	2년	0	X	0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남부지사	경	기도 수원시 매틴	·동 1267-7
	대표자	대표전	변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경기	이성욱	031-2	17-9255	5
남부	가맹본부와의 계약기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권한
	간	권한	권한	7786 7829
	2년	0	X	0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라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		로 185(산정동)
	대표자	대표전	변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전라	김윤선	061-27	79-9255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권함	
	간	권한	권한	766 7622
	2년	0	X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발한창원점	 경상남도	령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3	
	대표자	대표전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	
경남	이성호	010-55	48-0814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권한
	간	권한	권한	7100 1000

2년 O X O

*당사와 지사와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 기간은 같은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광고 판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브랜드별 구분이 어려워 아래 표의 광고/판촉 비용은 치킨이남달라 및 더기발한치킨의 가맹사업의 경우 적을 수 있습니다.

수 단	내 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단위:천원)
광고	(비공개)	2022 1471	5,188(가맹본부)
판촉	(비공개)	2023 년간	40,561(가맹본부)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치나그으세디저	경기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59, 단지상	031-794-0044
선언는행	하남금융센터점	가 (창우동, 신안아파트)	031-794-0044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국민은행에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항 :	항목 내 용		비고
신한은행 계좌가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멀티채널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게되가 있는 사업자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 (www.shinhan.com) 접속 → ③ (금융과 서비스)클릭 → ④ (가맹금 예치제)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 ⑥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본인이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개설시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대리인 개설시 발표 시 개설시 대리인 기계설시 등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조) 사망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조)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조) 사망 시 기계설시 (조) 사망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조)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조) 내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The기발한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99M ² 기준/부가세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가입비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매뉴얼 포함) 개점 전 교육비 	5,5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 는 소멸성 비용
홍보판 촉비	홍보 및 판촉비	2,200,000	홍보 및 판촉물 제작 후 반환 안됨, 단 제작 전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홍보 및 판촉물 제작을 위한 소 멸성 비용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양수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99M ²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기준/부가세 포함)		사유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71111174 0040
양수		제공 및		반환 안됨, 단 운영 전	가맹점 운영을
71.00111		인력지원의 대가	2,750,000	·	위하여 소요되
가맹비		(매뉴얼 포함)		해약 시 위약벌과	는 소멸성 비용
	2.	홍보지원비		상계처리 후 반환	C 750 00
	3.	양수 전 교육비			

나. 보증금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계약 종료일로부터	미납 채무가
계약이행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2,000,000	30일 이내에 잔존	보증금을 초
보증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가세없음)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과하는 경우
	제공하는 금액		정산 후 반환	피아드 경구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7.2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9,700,000	4,750,000	
가맹비	5,500,000	2,750,000	
홍보 • 판촉비	2,200,000	-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부가세해당없음)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The 기발한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원/VAT 포함/99m² 기준)

품목	지급대상	금액	3.3m ² 당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	------	----	----------------------------	------	------

인테리어		39,600,000	1,320,000		설치 전 소요비용
설비기기	변원이 기타	14,000,000	466,667	계약 시 개	공제 후 반환
주방 및 홀 집기	별첨 2~7 참 조	3,850,000	-	· 계약 시 개 · 별 계약	
초도물품	立	2,750,000	-	글 세약	미제공 시 소요비 용 공제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		4,400,000	_		용 중세 후 한편
합계	-	64,600,000	2,153,333	-	_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²당 110,000(VAT포함)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 *위 표의 3.3m2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전기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금전지급방법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박	지급시기	
十正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지급시기
예치 가맹금	10,700,000	5,750,000	계약 체결 시
중도금(1)	기타 대금의 40%	_	인테리어공사 시작시
중도금(2)	기타 대금의 40%	_	인테리어공사 완료시
잔금	기타 대금의 20%	_	초도물품입고 3일전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사.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The 기발한치킨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
가맹희망자 	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
	에게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만 18세 이상일 것

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2~7]과 같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대 상자	금 액(단위: 원, 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기 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 본부	220,000	매월 5일	후불로 반환 안됨
	수시 교육	가맹본 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점이 후 교육비	특 명 교육	가맹본 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본 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개별 청구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당비		가맹본 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 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본 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지 연 이 자	│ 지체에 따른	가맹 본부	연 20%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점포· 경개· 비용	선 리어 시공 비	계약자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개별 청구	발주 전 소요 비 용 공제 후 반환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경영 방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갱신 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The기발한치킨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정보공개사상의 양수가맹비, 계 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The기발한치킨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The기발한치킨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가. 귀하가 The 기발한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 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數/장
 -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의 특수관계인은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 다음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위 표상의 경제적 대가는 당사의 더기발한치킨 및 치킨이남달라 가맹사업을 합을 기재한 것으로서 개별 영업표지의 경제적대가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나.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 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3년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 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The 기발한치킨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 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The 기발한 치킨	크림꼬꼬			
오리지널 후라이 드 치킨	베이크오븐구이		1 회 위반: 구두 경고	
오리지널 양념 치킨	단호박치즈불닭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2 회 위반: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마늘간장치킨	소보루베이크오븐 구이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준용
숯불바베큐	해물바베큐		요구 후 계약 해지	
칠리순살치킨	순살파닭 등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집중 답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을 기름에 튀기거나 익혀서 판매하면서 당사와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닭강정제외)	더기발한치킨	_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명입력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등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직경 8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 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 정 완료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 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	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 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밖에 고객에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	
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	
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계약서 제6조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	
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 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계약서 제6조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계약서 제6조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사.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표상의 매출액은 항목에 따른 산정을 정확히 하기 어려워서 다소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비중

연도	오프라인(가맹점만)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가맹점만의 전용상품으로 당사는 직영점이 없어서 모두 가맹점의 전용상품입니다.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The 기발한치킨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이며, 갱신시에도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D 100 D 3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 100 D 00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D 180 - D 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 +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	
까?	D-180 ~ D-90
예→B, 아니오→®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	
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 day
(단, 계약기간 1년 연장)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	
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 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기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		
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	フ ス りき	항 각호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 ± 28	5 7 Y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3 조 2 항	25 조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및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및 31 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1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1호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 1항	
	및 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21 조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항~4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 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 조 2 항	
	내지 4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 7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30 조	
거부하는 경우	2~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21호	5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31 조 2항			
경우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
신규가맹계약 조건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계약이행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The 기발한치킨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The 기발한치킨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닭을 기름에 튀기거나 익혀서 팔면서 이와 함께 술을 제공하는 업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The기발한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1:00 ~ 02:00	월 26일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과 그 서 거	부담	비율	ㅂㄷ.저ㅋ
구분 광고 성격 	왕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결정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
	상품광고 등		가맹점사업자수	월 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가맹점모집광고	100%	-	_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 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기획, 제작 비용	용 이외는 협의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결리는 시간은 약 30~35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544-9922).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_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_	
정보공개서 등	-정보공개 사항 검토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제공 14(7)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즉시	IV.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필요시 실시	부담
	- 상권분석		1. 영업개시이전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3 일	금신시합 영합 삼소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6 일	
오픈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D-day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제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사유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JUNETH HEF 1110 FFD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
	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가영산구 구입 미용 미필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
	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지급 절차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납 결사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 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The기발한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The기발한치킨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一 十八亚芍	및 의견수렴 기를 모는 답는 당기			2724	
ЕНПО	가맹점사업자의	개별교육	개별협의	서태교으	
특별교육	요청 내용	기글꼬퓩	게르엽긔	선택교육	
TII 7 0	가맹점관리 및	лі ні п 0		피스교으	
재교육	영 안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40시간	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EH 70	개별협의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특별 교육 		협의 하여 산정	필요시 실시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재교육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비고
1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끝-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1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가맹점의 간판 및 사인물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별첨 3 가맹점의 설비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u>별첨 4 가맹점의 주방 및 홀 집기내역</u>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5 가맹점의 초도물품/원부재료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별첨 6 가맹점의 홍보판촉비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u>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u>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 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口)

확인서4: 비밀 유지 확약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제	공	일	자	:		
수	령	장	소	:		
수	령 자	주	소	:		
전	화	번	호	:	010-	
수	Ş	\$	자	:		(서명 또는 인)
가	맹	본	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가맹본부란을 제외한 이외의 기재 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